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6

발의연월일: 2021. 2. 16.

발 의 자: 박완주·이형석·서영교

김민기 · 오영환 · 임호선

이수진 · 이학영 · 박영순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 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 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 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 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함(안 제4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 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사.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아.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
- 자.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33조부터 제41조까지).
- 차.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2 조).
- 카.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

인의 관리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 타. 시·도지사는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 파. 시·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은 제외함)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재난 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자원을 말한다.
-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 다. 그 밖에 현금과 유가증권이 아닌 동산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동산과 민간 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나.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 유재산
 - 다. 그 밖에 민간의 재산으로서 선박 및 항공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산
- 4. "재난관리인력"이란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

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 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

-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 다.
- 제7조(공급업자의 현황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종류별 또는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 등

공급업자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하다)
-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① 제7조에 따라 공급업자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한 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1.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 거나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 2.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고,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 2. 기술 개발

-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재난관리지원기업이 도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 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 2. 기술 개발
 -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역재난 관리지원기업이 도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 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행정안전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15조(매점매석 행위 및 수출 등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 등을 기피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 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등의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내용 및 수출 등의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재난관리물류 전담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물류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 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재난관리물류기업이 도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 및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기관

- 제20조(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 다.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50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21조(자원관리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자원출납관) ① 자원관리관(제24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위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자원운용관) ①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워등을 자원운용관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 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 관(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

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이하 "소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 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표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협조할 수 있다.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 • 관리

-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 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 4.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도지사
-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 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전산시스템을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 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 2. 내용연수(耐用年數)
-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7조에 따른 재난 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 난·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 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및 소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민간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 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 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 보관 및 사용

-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① 자원관리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비축·관리하고 국가재 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 또한 기억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③ 계약 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 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비축시설
 -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비축시설
 -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축시설
 -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수 없다.
- ④ 자원출납관은 비축시설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5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원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 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 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37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 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 품(제5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 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2.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거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39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1. 다른 관리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41조(망실·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재물조사 결과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재난관리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 2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① 재난관리인력의 관리는 재난관리 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로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 제44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 제45조(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같다.
 - 1.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 2.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 3. 제44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 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이 하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재난관리 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으로 인한 재난관리물품의 양여 및 대여 등에 관한 행정절차는 생략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

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7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

- 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 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난관리자 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제49조(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 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 제50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시·도지사의 동원명령) ① 시·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1.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60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재난안 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소관 재난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도지사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 여야 한다.
- 제52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①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1. 국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 · 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② 시·도지사는 소관 재난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3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 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 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 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事後精算)한다.
 - ③ 국가는 국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⑤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 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 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 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 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시·도지사
- 3. 시장 군수 구청장
- 4. 공급업자
- 5. 물류기업
- 6.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행정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 업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 업
- 제59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 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 3.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
 - 4. 관리기관의 장
 -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 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자원출납 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제61조(청문)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업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
 -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업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 4.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 제6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5. 제53조에 따른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 4. 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 제65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6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 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 ②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통합ㆍ관리
-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통합관리시스템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